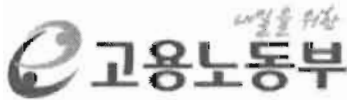


<1.6(목) 조간 (인터넷 1.5(수) 12:00이후)>



보도자료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김규석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류해중 사무관

TEL : 02) 6902-8322

e-MAIL : sunbell@moel.go.kr

FAX : 02) 6902-8422

▶ 2011. 1. 5(수) 배포

▶ 총 쪽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알림마당<e-노동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취업애로계층, 취업으로 가는 길 넓어진다

- 고용노동부, 2011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대상자 확대 -

- 고용노동부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1.1.1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 '09년 시범실시 후, '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단계별·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 '10년에는 약 3만명의 취약계층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프로그램 종료자의 약 68%가 취업에 성공하였다.
 -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초기 취업지원계획수립부터 직업훈련, 집중 취업 알선까지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취업 성공시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지급
 - * '10.11월말까지 27,323명이 참여하여 원래 목표했던 2만명 대비 136.6% 달성, 지원 종료자의 취업률은 68.3%로 전년(55%)에 비해 크게 증가
-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이었던 데 비해, 올해부터는 노숙인, 출소(예정)자, 신용회복지원자, (준)고령자, 여성가장 등 다양한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지원규모 역시 올해는 5만명으로 설정되어, 2만명을 목표로 했던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되었다.

취업성공 우수사례 어둠에서 세상으로

- 그렇게 어느덧 하루, 이틀, 보름, 한 달, 세 달을 넘어 무직으로 여섯 달 가까이 보내다 보니 우울증도 오게 되고 자신감도 결여되고 나는 패배자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면서 대인기피증도 생겼습니다.... 한통의 반가운 우편물로 인해 어둠에서 희망으로 이끌어 준 고용노동부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겉모습이 예쁘지 않아도, 자격조건이 부족해도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직장에서는 여러분들을 꼭 찾을 겁니다... 고용노동부로 희망의 SOS를 요청하세요^^* ('10년 하반기 취업성공 패키지 우수사례집 중에서)

취업성공 우수사례 짧지만 소중한 기회

- 취업이란 단순히 자격증 몇 개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성취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면접에 대한 방법 또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의에서 배운대로 면접시 주의 할 점을 상기하면서 자신 있게 보았던 면접은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취업 후 저 처럼 어려운 여건이나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도 저와 같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위의 힘든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10년 하반기 취업성공 패키지 우수사례집 중에서)

- 한편, 올해부터 참여신청자의 취업역량지수를 평가하여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부터 우선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참여 대상자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규모를 확대하고 위탁기관의 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 사업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11년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현황>

	2010		2011
참여 대상	저소득층	⇒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노숙인, 출소(예정)자, 신용회복지원자, 비주택거주자, 비진학 고졸이하 청년, 3개월 이상 장기구직 (준)고령자, 건설일용근로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등
참여 규모	2만명 목표 (약 3만명 참여)	⇒	5만명 목표

-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취업성공지원팀』을 설치하고 수급자 전담자를 지정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적극 추진하고,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는 1년간 최대 650만원(기초생활수급자 86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된다.
- 나영돈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취업성공패키지가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대표 취업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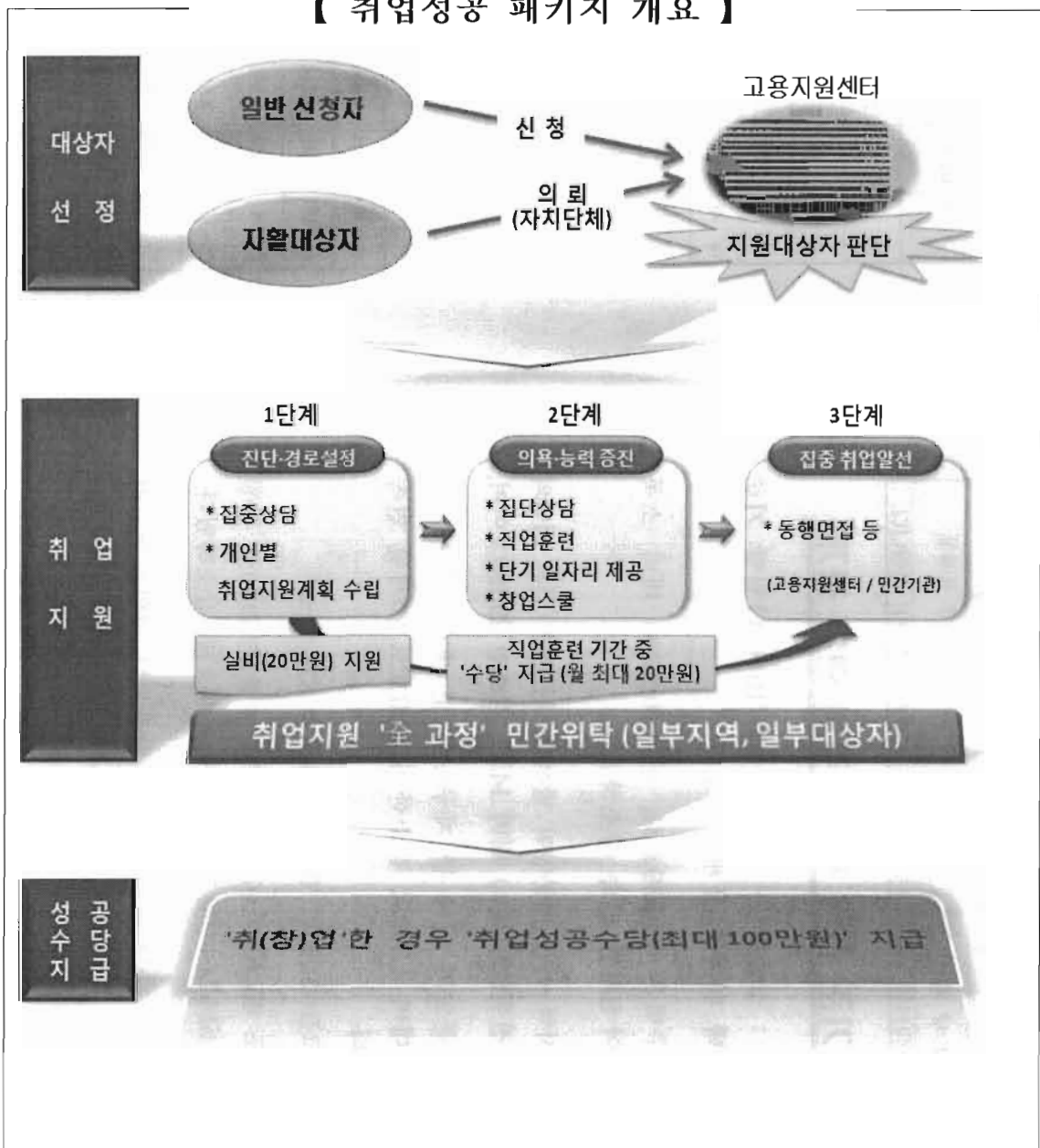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설명자료

1.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개념	1
2. 참여대상자 선정	2
3. 취업지원 1~3단계(탄력적 운용)의 서비스 내용 ..	5
3-1. 취업지원 1단계: 진단·경로 설정	6
3-2. 취업지원 2단계: 의욕·능력 증진	7
3-3. 취업지원 3단계: 집중 취업알선	9
4. 취업지원 ‘중단’ · ‘유예’ 및 ‘종료’	10
5. ‘취업성공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11

1.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개념

-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 취업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

【 취업성공 패키지 개요 】



2. 참여대상자 선정

① 참여대상자 요건

[1] I 유형 : 저소득층 위주

- 차차상위계층 이하(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 구성원
 - 현행과 같이 “당연”대상자와 “확인”대상자로 구분하며, 확인대상자의 경우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상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선정
 - (소득) 요건확인 가능성과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09년도와 같이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150%’ 기준” 설정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11)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11년 최저생계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150%	798,875	1,360,245	1,759,682	2,159,120	2,558,556	2,957,993	3,357,431
보험료	22,528	38,359	49,623	60,887	72,151	83,415	94,680

- 노숙자, 출소(예정)자, 새터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 청소년*,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
 - * 학교 중도 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범죄피해·성매매 등 제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하며 기관** 등을 통해 확인, 추천된 경우에 한하여 선정
 - ** 새터민(거주지보호담당관), 결혼이민자(출입국관리소), 신용회복지원자(신용회복위원회), 위기청소년(보호관찰소), 출소(예정)자(법무부 갯생보호공단), 노숙자(보호시설),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국토해양부)
- (연령) 유관사업과의 차별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참여대상자는 “'18~64세’ 해당자”로 한정(공통사항)

- 다만, 청년층의 경우 “15~29세”로 하며, 군필자는 32세까지 가능

[2] Ⅱ유형 : 청년층 위주

-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 고졸이하(대학·전문대 중퇴자 포함) 저학력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층
 - 다만, 고등학교(전문계고등학교 제외)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된 자 포함
- 장기구직자
 - 대학졸업 또는 실직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
- 니트족
 - 최근 2년 동안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으로 주로 구직단념자, 단기근로 반복자(최근 2년간 일용직·기간제 등의 근로만 반복한 자) 등의 청년층
- 기타 학교나 사회복지관 등 외부 관련기관의 의뢰 및 참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3] Ⅲ유형 : 훈련 위주

- 3개월 이상 장기 구직한 50~64세 (준)고령자
- 건설일용 근로자 및 구직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가 7만원 이상자 또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참여 배제

[4] IV유형 : 기타 취업취약계층

-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연간 매출액 8,000만원 이하) 등 기타 취업취약계층

② 참여대상자 선정

- (대상자 발굴) 고용센터에서는 관내 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 및 통·반장회 등 주민을 상대로 한 밀착홍보 실시
 - 고용센터에서는 참여대상자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실시한 후 적정 참여대상자를 선정된 민간위탁기관에 의뢰
- (신청서 접수) 고용센터에서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의 「'취업성공 패키지' 신청서*」 접수(고용센터)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수급자로서 고용부로 의뢰되는 대상자(취업대상자)는 초기상담시 작성하여 접수
 - * 의뢰받은 대상자가 복지부(지자체)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인 경우(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확인)에는 지자체에 재심사 의뢰
- (요건 확인 및 참여대상자 선정) 대상자의 증빙자료 확인 및 '선정·제외'기준 충족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여부 결정
 - ① (증명서 확인 가능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접수로 수혜가구원 확인
 - * '의료급여패키지', '차등보육료 패키지' 등 차상위계층(기초수급자 포함) 대상 각종 복지사업 지원대상 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② (증명서 확인 불가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수준을 확인하여 적격여부 결정(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납입고지서) 확인)

⇒ '납입액 상한'은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원수별 '차차상위계층 소득 인정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

* 2.82% : '11년도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개인부담비율

⇒ 상기 상한액은 '지역'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준용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 상한 (원/월)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11년 최저생계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150%	798,875	1,360,245	1,759,682	2,159,120	2,558,556	2,957,993	3,357,431
보험료	22,528	38,359	49,623	60,887	72,151	83,415	94,680

⇒ '보험료 납입 상한액' 충족 여부는 가구단위로 판단하되, 동일 가구 내 '직장·지역'가입자와 각각 다른 '직장'가입자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③ (기관추천/확인) 출소(예정)자 및 신용회복지원자 등 기관에서 추천 및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없이 참여 가능

- 이상의 요건 충족에 대해서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참여 대상자 해당여부와 함께 1차 상담일을 지정·통지

○ (이동상담서비스 운영) 거리적으로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고용 센터(민간위탁기관) 담당자가 특정 요일을 지정하여 자체단체와 협조하에 모집된 참여대상자에게 사업안내 및 상담서비스 실시 (참여 대상자에 대한 프로파일링 병행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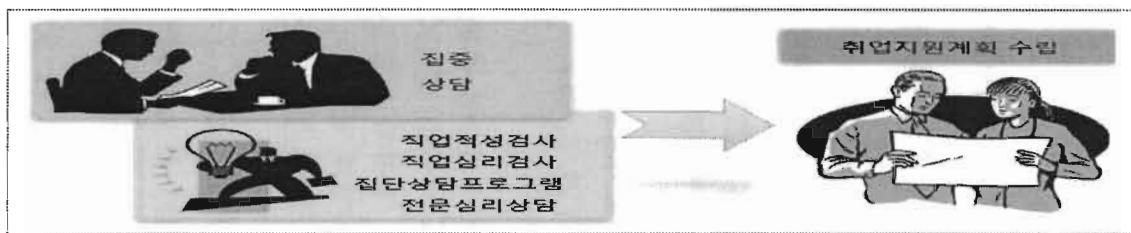
3. 취업지원 1~3단계(탄력적 운용)의 서비스 내용

3-1. 취업지원 1단계 : 진단·경로 설정

집중적인 상담과정 등을 거쳐 개인별로 특화된 취업경로 설정

① 개 관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1단계 프로그램은 '심층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통한 'IAP' 수립과정으로 운영



② '집중상담 등' 실시

- 참여대상자의 직업적성 및 선호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집중상담 등*' 실시하되, 단체 프로그램 운용 병행 가능
- 원칙적으로 집중상담은 1개월*의 기간 내에서 운용하되, 집중상담 과정 중 '직업심리검사' 포함 실시
 - * 필요한 경우 '집중상담' 기간은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
- '상담은 내실 있는 상담을 위하여 일정시간 이상의 적정시간을 확보

③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전문심리상담' 실시

- 1단계 중이라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과정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 ☞ 『취업지원 2단계 : 의욕·능력 증진』 내용 참조
- 아울러,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간심리전문기관을 통해 '심리상담' 실시(집중상담과 병행 가능)

- '심리상담' 실시여부 및 구체적인 실시방법(해당기관 의뢰 또는 심리상담사의 센터방문)은 참여자의 의사를 감안하여 조치

④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

-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결과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 특성이 반영된 '취업지원계획'을 수립
- '취업지원계획'은 참여대상자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수립(내용 공유)하되,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
 - '참여대상자의 취업지원 경로'와 참여대상자의 성실한 취업지원 계획 이행 의무 등
 - * 직업훈련 경우 '희망'직업 관련 상세한 과정관리계획 포함

3-2. 취업지원 2단계 : 의욕·능력 증진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세부 프로그램 구성 및 프로그램별 운용기준 마련·적용

① 개 관

- 근로의욕 증진 및 취업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2단계 프로그램은 '직업훈련 등' IAP 이행을 위한 세부과정으로 운영



② 집단상담 프로그램

- 참여대상자에 대하여 근로의욕 증진 및 구직기술·취업자신감 향상 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 필요한 경우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1·3단계 중이라도 실시하되, 동일 프로그램의 중복 수강은 지양

- 기존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되, '취업희망' 프로그램과 '성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용

* 취업희망·성취·청년층직업지도·성실 프로그램

* 본인희망 시 '취업희망' - '성취' 프로그램의 단계적 참여 또한 허용

③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 희망하는 직종 관련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 참여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직업훈련' 실시

* 참여대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훈련서비스 전달체계

-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활용한 직업훈련 참여 지원

- 참여대상자의 인적·경제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일반 구직자 대비 '자부담' 면제 등 '계좌제' 관련 차등 지원

	일반구직자	사업참여자*
지원한도	200만원	300만원
자부담	20 - 40%	면제

* '사업참여자'은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

- 지원한도는 원칙적으로 200만원으로 하나, 차차상위계층, 북한이탈 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에 한하여 지원한도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자비부담은 사업참여자 전체에 대하여 면제됨

④ '디딤돌 일자리' 제공

- 일자리 경험을 통한 취업의욕 제고와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습득을 목적으로 **과정적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디딤돌 일자리' 제공
- 가급적 참여대상자의 희망직종 등을 고려하여 관내 '디딤돌 일자리' 중 적절한 디딤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⑤ 창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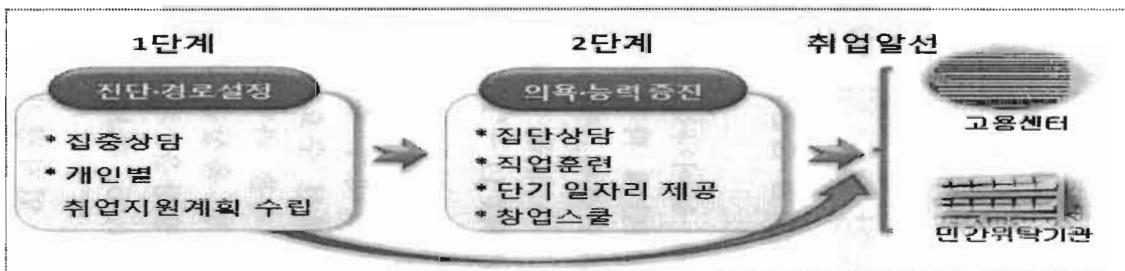
- 참여대상자 중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창업지원'과정(성공창업 패키지 지원) 참여 지원
 - * 소상공인 지원센터(전국 45개 센터, 14개 분소) →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교육 일정을 감안하여 참여 지원

3-3. 취업지원 3단계 : 집중 취업알선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표인 참여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고도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다각적으로 실시

① 개 관

- 1(2)단계를 마친 참여대상자에 대하여 고용센터와 민간기관(위탁기관이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서 집중적인 취업알선 실시



② 취업알선

- 개인별 IAP 및 '의욕·능력 증진'과정의 세부 프로그램 참여이력 등을 감안하여 맞춤형 취업알선 실시
 - 취업알선은 IAP 수립 후, 2단계부터 상시적으로 실시 가능
- 취업알선은 고용센터에서 직접 제공하거나 민간취업전문기관(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제공
 - 고용센터 내지 민간취업전문기관에서의 취업알선 제공여부는 1차적으로 참여자의 의사를 감안하여 조치

③ 동행면접 실시

- 참여대상자의 인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취업알선과 함께 '동행면접' 병행·추진
 - 특히, 동행면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동행면접 중심의 취업알선 실시
 - * 민간취업전문기관에 의한 민간위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4. 취업지원 '중단' · '유예' 및 '종료'

일정한 경우 참여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중단'·'유예' 내지 '종료'하고, 해당자의 재참여를 일정기간 제한

① 취업지원 '중단'

- 정당한 이유 없는 '취업지원계획'(IAP) 불이행 및 불성실한 프로그램 참여 등 일정한 사유 존재 시 취업지원 중단

- 취업지원 '중단'은 해당자에게 중단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자는 '중단일'부터 1년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및 디딤돌 일자리 관련 해당 사업 지침에 따른 지원중단 등 추가조치 가능

② 취업지원 '유예'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부상 등으로 상당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취업지원을 '유예'

* '유예'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되, '본인의 임신·출산'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허용

- 취업지원 '유예'는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유예신청서'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허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③ 취업지원 '종료'

- ①취업지원 기간 중 '취(창)업'하거나 ②'취(창)업' 없이 1년간의 취업지원 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종료'

- 취업지원 '종료'는 '종료'사유가 발생한 자에게 종료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 취업지원 종료자는 '취업지원 종료일(내지 '취(창)업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프로그램 참여 제한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취(창)업한 경우에도 '취업지원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참여 제한

5. '취업성공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사업 참여자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단계 실비', '생계유지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등 지급

① '1단계 실비' 지급

- (지급요건) 참여대상자로서 1단계 과정을 거쳐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실비(20만원) 지급
 - 취업지원 '쏠 과정' 위탁대상자 또한 IAP 수립(최초 상담일 기준 1개월 전·후 수립 원칙)을 전제로 지급
 - * IAP(개인별 취업지원계획)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 등'의 사유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 1단계 시 집단상담프로그램 미 참여시 5만원 지급
- (지급시기) '1단계 실비'는 IAP 수립일 이후에 지급하되, 지급대상자의 '신청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② '생계유지수당' 지급

- (지급요건) 참여대상자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하여 월 최대 20만원의 생계유지수당 지급
 - ① 대상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으로 한정
 - ② 결석제한 : 단위기간 내 결석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 ③ 기간/내용제한 : 6개월 이내의 훈련과정에 한하여 지급하며, 과정은 총 3개 과정으로 한정(기간 내 중복 가능)
 - * 미수료 및 중도탈락의 경우 과정을 수강한 것으로 간주
 - ④ 지급대상 : 직업훈련 '참여수당'의 지급취지*를 감안하여 지급대상은 '일반'신청자(전 과정 위탁대상자 포함)로 한정
 - * 저소득층의 경제적 특성을 감안하여 훈련참여기간 중 생계부담 완화 목적 → 매월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자활'대상자 제외
- (지급시기) 직업훈련 '생계유지수당'은 '훈련개시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지급하되, 신청서 제출일부터 15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직업훈련 '생계유지수당'은 지급요건 충족 및 지급 대상자의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단위기간내 참여한 훈련일수 1일 당 15,000원 지급

③ '취업성공수당' 지급(I 유형에 한하여 지급)

- (지급요건) 사업 참여자 중 취업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성공수당' 지급
 - ① 고용형태 :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 여부 확인)
 - ② 취업시점 :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또는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업으로 하되
 -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취업'은 IAP 수립 이후, 2단계 내지 3단계(1단계 후, 3단계 참여자 경우) 참여일 이후의 '취업'으로 한정
 - *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낮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 감안 시, 1단계 중 '취업'까지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
 - ③ 취업경로 : 센터의 '알선'에 의한 취업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참여대상자 본인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한 '취업'도 인정
- (지급방법) 당사자 본인에 대한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기간의 근속유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3회로 나누어 지급
 - '취업일'부터 같은 직장에서 1(3·6)개월 경과 시 20(30·50)만원을 각각 지급하되, 조건부수급자(법정 차상위층)가 탈 수급(일정소득 이상)한 경우 100(50)만원 추가 지급
- (지급시기)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일'부터 1(3·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지급하되, '지급신청서' 제출일부턴 1개월 이내에 지급